

수원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1나971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1나97115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1가단50766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

담당변호사 박정혁, 유병일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

변론 종결 2022. 7. 21.

판결 선고 2022. 9. 15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11. 2. 선고 2021가단50766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8. 26. 체결된 매매계약을 97,277,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2,277,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영호

판사이경선

판사김리사

별지